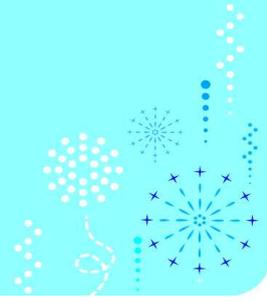


2021년부터 변경되는 원천징수 관련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1.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기령 25조의3 3항)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로 변경하였다(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47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였다(용어통일).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령 28조)

가산세 면제 사유에 있어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는 것으로 추가하였다(2021.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조 1항)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율의 최고세율 구간을 종전 5억원 초과 42%에서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42%, 10억원 초과는 45%로 조정하였다(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소득법 14조, 21조, 37조, 84조)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가상자산의 발생차익에 대해 20%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하고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신설하였다[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가상자산 과세 인프로 준비기간 고려)].

2 2021년부터 변경되는 원천징수 관련 주요내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소득법 14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는 것을 신설하였다(2022.1.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64의4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을 분기별/연도별로 제출하도록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를 신설하였다(20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1)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소득령 88조)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하였다(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제취득가액 평가방법(소득령 88조)

22.1.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하였다(20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소득령 215조의4)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자별로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방법 명확화(소득령 179조, 183조, 207조, 법인령 제129조, 132조, 137조)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에서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현금·가상자산 인출시마다 인별 누적원천징수액에서 인출한 비율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 및 확인(3년 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22.1.1. 이후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 (1)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조, 소득령 17조의4)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였다.
-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소득령 17조의4, 12조, 18조, 38조)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을 근로소득에 추가하였고,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다(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3)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제12조, 소득령 제12조)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종전 실비변상적 급여인 근로소득 비과세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2조, 20조, 21조)
근로소득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을 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한정하였고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을 종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소득령 17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서 서비스 관련종사자의 직종을 종전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및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추가하였고 사업자 요건도 종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요건을 삭제하였다(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4 2021년부터 변경되는 원천징수 관련 주요내용

8.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관련 제도개선

(1)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조, 39조, 소득령 80조)

기부금단체의 명칭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통일하였다.

(2)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지정요건 정비(소득령 80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에서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경우에 해당시에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가하였고(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완화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일 이후 5년에서 3년(재지정시 6년)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으로 첫째,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중 14개 사유 외에 회계감사의무(상증법 50조 3항),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제50의2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제50의3조)를 추가하였고 둘째,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취소요건에 추가하였다(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조, 174조의3)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였다(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6의3조, 225의3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항목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에게 지급한 월세액을 추가하였다(2021.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조 4항,5항, 조특법 95조의2)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20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 134조)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명확화하였다(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조, 164조의3)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종전 지급일(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서 지급일(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일(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서 지급일(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하였다(20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법 81조의11, 법인세법 75조의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종전 0.25%~1% (0.25%~0.5%)이던 것을 0.125%~0.25%로 완화하였고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고,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등 일정비율 이하시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규정을 신설 하였다(20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조 1항 별표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변경하였고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종전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조정하였다(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제 1장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일정표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년 1월
1.11.	2.28.	3.10.	4.12.	~5.31.	~6.30.	7.12.			10.11.		~12.31.	1.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7~12월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영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별 납부 (1~6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별 납부 (7~12월분)
2.1.	3.2.					8.2.						2.3.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2021년 개정)	지급명세서 제출(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제외)	지급명세서 제출(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2021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2021년 개정)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021년 개정**

【원천징수제도의 체계】

1.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이하 '신고서'라 함)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 실제로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급여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말(근로·퇴직·사업·종교인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21.7.1. 이후 지급분) **2021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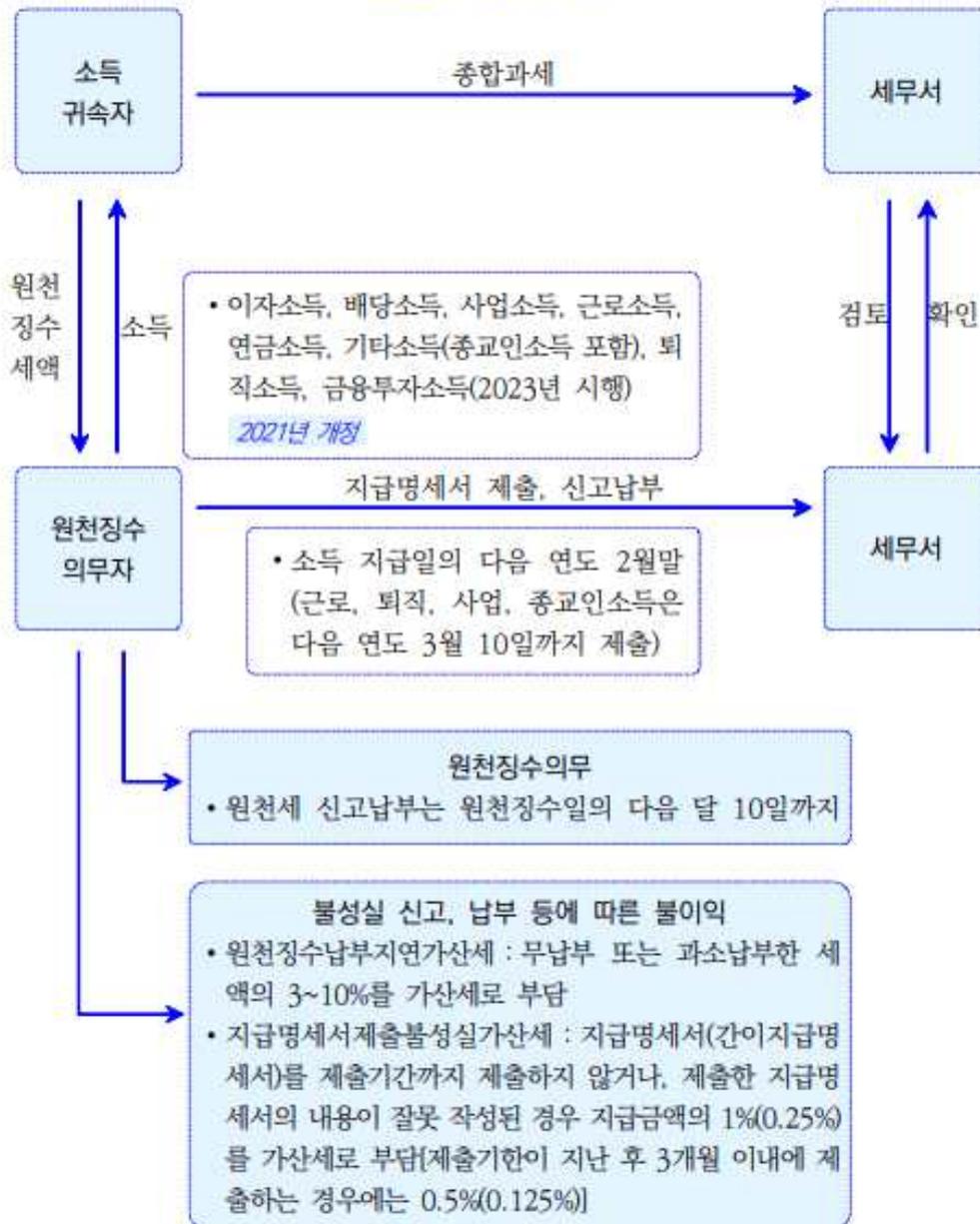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21.7.1. 이후 지급분) **2021년 개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 개정.**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이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누락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제도의 체계도



1. 원천징수는 소득관련 세금징수방법 중 하나이다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법인·소득세 신고 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조기에 일정 부분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소득자는 법인·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된다. 본 제도의 취지는 징세비 절감, 납세의무이행의 편의 도모, 과세자료의 파악과 근거과세 구현, 재정수요의 조기 확보에 있다.

일반소득 vs 원천징수대상 소득

구 분	일반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서 제출	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
	납부시기	신고 시기에 납부(일시 납부)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분납 효과)

2.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소득법 127조·156조, 법인법 73조·98조).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자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의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므로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득자 분류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 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2023년시행) <i>2021년 개정</i>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2) 원천징수의 방법 및 분류

[Appetizer]

원천징수의 분류는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추후에 다시 계산하여 정산해야 하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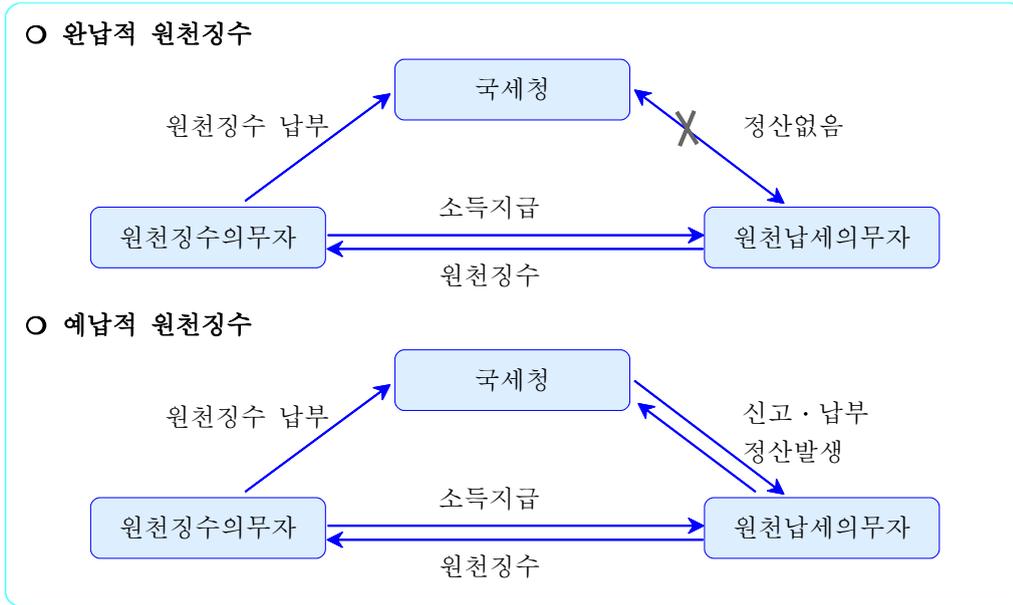
1)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부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자는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추후 정산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인 것이다.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2) 예납적 원천징수(종합과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존재하여 재차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된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즉, 완납적 원천징수와는 달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추후에 반드시 다시 정산하는 형태이다.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3) 그 밖의 원천징수(국세 외 원천징수)

①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농특별 7조 3항).

- ㉠ 이자·배당(금융)소득 중 감면분(다만, 농특별 4조 4호는 비과세)
- ㉡ 근로소득 중 감면분(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¹⁾를 적용받는 근로자)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국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법 103조의13·103조의18·103조의29·103조의5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

1)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을 대상으로 함.

③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소득세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이용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3. 원천징수의 세율

[Appetizer]
원천징수의 세율은 소득별로 다르다. 원천징수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하자

(1)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구 분	세 액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 (차등과세)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 (차등과세)		90%		

2) 현행 지방법에서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지방법 103조의29 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정(지방법 103조의29)이 없어 월별로 납부해야 한다.

12 제1장 원천징수란?

과세표준		구 분	세 액
	그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70%(60%)	
	퇴직연금·사적연금	3~5%, 4%	
기타	복권당첨금	20%	3억원 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 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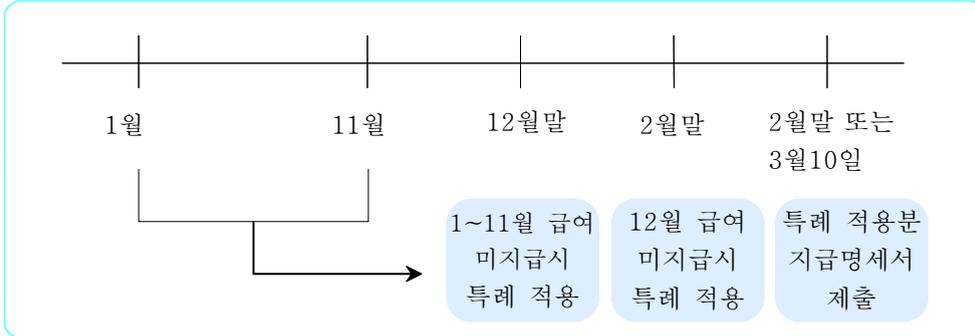
4. 원천징수 시기를 정확히 지키자

(1) 원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법 130조 등, 법인법 73조 1항 등).

(2) 예외(원천징수시기의 특례)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선 세금납부 후 소득자에게 지급).



소득별 원천징수 시기 특례(지급시기 의제)

구 분	(예외)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 ³⁾
근로·사업·퇴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 등을 12/31 미지급 시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 등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 2월 말일

5. 이럴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1) 소액부징수(소득법 86조 1호, 법인법 7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해당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⁴⁾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한다.

(2)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소득법 154조, 법인법 73조 1항)

(3)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소득법 84조)

(4) 원천징수 배제(소득법 155조)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3)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
 4)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는 하여야 함

14 제1장 원천징수란?

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①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득법 85조 3항)
- ②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6.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제때에 발급하자!

(1) 근로·퇴직소득(소득법 143조·146조)

1) 계속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함. 단,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2) 중도퇴사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3)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4) 퇴직소득자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8.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절차를 확인하자!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신고·납부 방법

1) 신고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2) 납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한다(소득법 128조 1항).

(2) 반기별 납부제도

1) 제도의 개요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아래 소득은 제외하므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소득법 128조 2항).

- ①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인정배당 및 인정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② 국조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법 156조의5 1항 및 2항)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적용요건

- ① 직전과제기간까지의 1월부터 12월까지(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일 것.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 없이 반기별납부 신청 가능
- ②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신청기한

상반기(6.1~6.30), 하반기(12.1~12.31.) 신청 가능

전 자	서 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4) 신고·납부기한

반기별 납부를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9.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국기법 47조의5).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한다.

실무 Point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 시 적용)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

① 가산세액의 계산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 \cdot \text{무납부세액} \times 2.5/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10\%$$

(단, 법정납부기한까지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leq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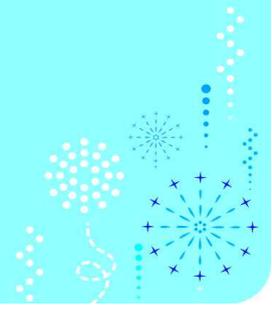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기법 제5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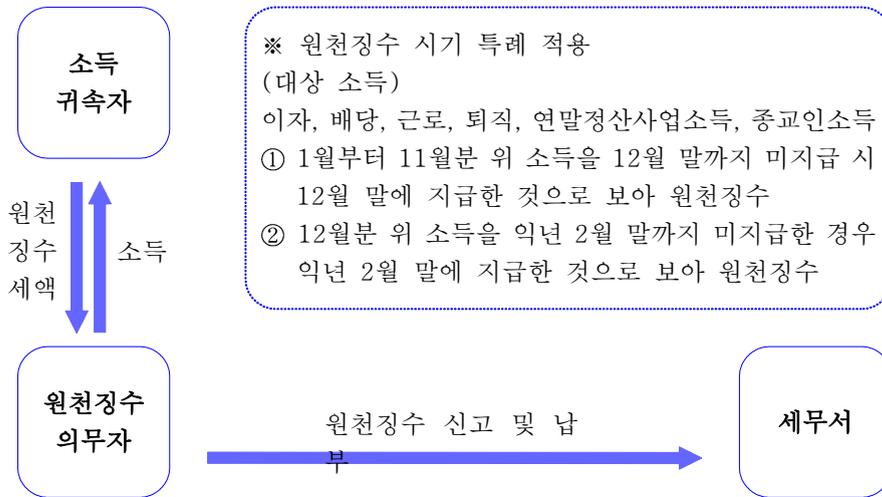
구 분	가 산 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제 2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개요



※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적용

(대상 소득)

이자, 배당, 근로, 퇴직, 연말정산사업소득, 종교인소득

① 1월부터 11월분 위 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 시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② 12월분 위 소득을 익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익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원천세 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법인 및 국가기관 등 신고특례

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반기별 납부 특례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필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1. 원천세 신고·납부 절차를 준수하자!

[Appetizer]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법 적용에 있어 가산세가 존재하면 강행규정이고 가산세가 없다면 협력의무이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원천징수 관련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수하여 가산세를 회피해야 한다.

(1) 원천세 신고·납부

1)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우편제출 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해야 한다(소득법 128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대상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자
개인	개 인		주된 사업장(주소지) 소재지	개 인
법인	일반법인	본 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점	지점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점
		(본점일괄납부신청) 해당 지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사업자단위등록	본 점	본점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본점	

※ 국가 및 법인의 경우 본점(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3)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이해하자

(1) 관련 서식 찾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는 국세법령정보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내려받기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성(총 10쪽으로 구성)

-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본표 : 10쪽 중 1쪽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10쪽 중 4쪽
 - 신고서(부표 등) 작성여부 란에는 작성필요 시 O표시를 체크
 - 근로소득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③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10쪽 중 7쪽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만하면 되나,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④ 기납부세액 명세서 : 10쪽 중 8쪽
- 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10쪽 중 9쪽
- ⑥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 10쪽 중 10쪽

3. 매월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16.>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20년 7월			
① (매월) 반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OOO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XXX-XX-XXXX X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부)	
										전화번호		02-123-4567	
										전자우편주소		abc@hanmail.net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6	30,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2	3,000,000	0							
		연말정산	A04										
		환급신청	A05										
		납부금액	A06										
	퇴직소득	가감계	A10	8	33,000,000	1,200,000				1,200,000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0,000,000	200,000							
		가감계	A20	1	10,000,000	200,000				200,00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매월징수	A43											
	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2,000,000	100,000								
	가감계	A40	2	2,000,000	100,000				10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	A69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1	45,000,000	1,500,000				1,500,0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 - 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⑱ 금융 회사 등	⑲ 합병 등	⑳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 + ⑮ + ⑰ + ⑱)	㉑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㉒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 - ㉑)	㉓ 환급 신청액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1) 제출개요

1) 제출대상자

- 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자 또는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
- ② 납부(환급)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제출방식

- ①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 서식을 귀속월 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기본사항 작성방법

1) 「① 신고구분」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 ㉡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를 함
※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표시할 수 없음
- ㉢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
-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하고 「㉡ 환급신청액」 기재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

2) 「② 귀속연월」

② 귀속연월	년 월
--------	-----

-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월(2020년 귀속 → 2021년 2월)을 기재
※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1월 또는 7월)을 기재
-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

출

- ㉔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분에 대해 작성 제출

3) 「③ 지급연월」

③ 지급연월	년 월
--------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기재

※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6월, 12월)을 기재

(3) 원천징수명세서상 소득지급

1) 「④ 인원」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④ 인원」란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 수를 기재

2) 「⑤ 총지급액」

- ㉕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⑤ 총지급액」란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실무 Point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기재 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하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는 인원은 제외함

㉖ 비과세 근로소득의 기재 여부 검토표(소득칙 별지 24호서식(1) 5쪽)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재 여부
소득법 12조 3호 가목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나목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법 12조 3호 라목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법 12조 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 재 여 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법 12조 3호 바목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법 12조 3호 사목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법 12조 3호 아목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조)	○
	소득령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는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소득령 §12 2~3(일직료·숙직료 등)	×
	소득령 §12 3(자가운전보조금)	×
	소득령 §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소득령 §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
	소득령 §12 12 가(연구보조비)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소득령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법 12조 3호 자목	소득령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소득령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소득령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 인건비)	○
	소득령 §12 14(취제수당)	○
	소득령 §12 15(벽지수당)	○
	소득령 §12 16(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득령 §12 17(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소득령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법 12조 3호 차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법 12조 3호 카목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 재 여 부
소득법 12조 3호 타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법 12조 3호 파목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하목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법 12조 3호 거목	소득령 §16 ① 1(국외 근로 보수) 100만원	○
	소득령 §16 ① 1(국외 근로 보수) 300만원	○
	소득령 §16 ① 2(국외근로)	○
소득법 12조 3호 너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법 12조 3호 더목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법 12조 3호 러목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현물 급식	×
소득법 12조 3호 머목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득법 12조 3호 버목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법 12조 3호 서목	교육기본법 §28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법 12조 3호 어목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법 12조 3호 저목	소득령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구 조특법 15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조의4 6항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75%, 100%)	○
조특법 18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50%, 70%, 90%)	○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 교수)	○

※ 인원 및 총지급액의 합계는 총합계(A99)란의 「④인원」, 「⑤총지급액」란에 기재

(4)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

- ① 징수세액(⑥~⑧)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로 구성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해당되는 코드에 맞추어 각 소

특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구분 기재

-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환급세액 앞에 “△” 표시하여 기재
- ㉠ 「⑧가산세」는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과소납부하거나 지연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란에 구분 기재
 - “△”표시된 세액은 총합계(A99)의 ㉢~㉤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은 [2. 환급세액 조정, 당월 발생 환급세액 ㉥ 일반환급]란에 기재

(5) 납부세액

-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 . .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란에 작성
 - * ㉨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상계내역을 기재
-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 조정대상환급세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 조정 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코드별 해설

1) 근로소득 개별 항목

항목 및 코드	내 용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
중도퇴직(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연말정산(A04)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기재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소득구분 중 2013년 신설된 퇴직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의 연금계좌(A21, A41, A48) 항목은 연금계좌(DC형, IRP, 연금저축)사업자인 금융회사만 작성해야 한다.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조정환액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거주자 (개인)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거주지역주택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이자·배당소득	세금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종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 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종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C94								
			세금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일반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세율(14%)										
		직장공제회 초과환급금(기본세 율)	C18									
부동산종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일반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일반												
이자소득	C14											
과세												
배당소득	C24											
고배												
당 배당소득(9%)	C91											
기업												
배당소득(25%)	C92											
비실												
명 비실명이자소득	C15											
소득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과건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 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거주자 (개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인원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과건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㉔ · ㉕),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복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이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용합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용합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용합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최초과반환금(기분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용합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 20%, 15%, 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용합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용합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용합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용합니다.
10.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 [C69]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과외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과건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용합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용합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용합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용합니다.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용합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용합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용합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 [A40], [A50], [A60], [A69], [A70]란에 각각 적용합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합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용합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용합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용합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25. [C81~C88]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용합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용합니다.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 의 종 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 원	소득 지급 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 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합계												

작성 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⑫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중(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중(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⑫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 기납부세액명세서 (단위: 원)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합계										

③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성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①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환급세액 (① - ②)		
②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환급세액	⑧ 조정대상환급세액	⑨ 당월조정환급세액	⑩ 차월이월환급세액
		④ 전월미환급세액	⑤ 기환급세액	⑥ 차감잔액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환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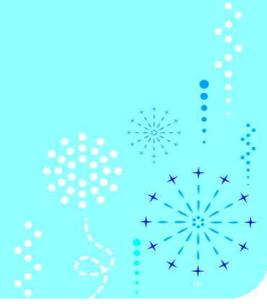
작성 방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정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정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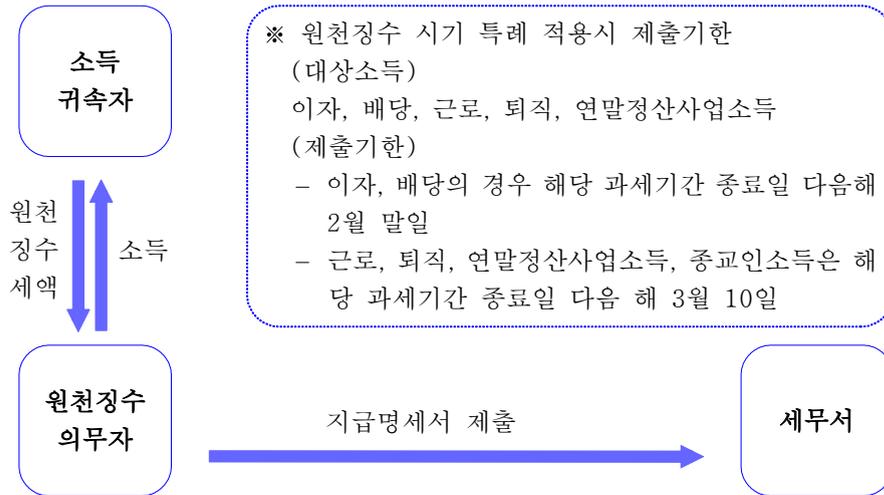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④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제 3장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개요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말일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은 다음해 3월 10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작성항목

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원천징수 상세내역

제출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
- 상용(자체)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산매체를 변환하여 전송제출
-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 전산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
- 지급명세서 출력본 또는 수기 작성분을 종이서류로 제출

1.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 핵심이다

[Appetizer]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핵심 제출서류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지급자가 낼 세금에 관한 서식이고 소득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서식이다. 이는 과세관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소득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제출시기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소득법 164조; 법인법 120조)

구 분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 ^{주1)}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2021.7.1. 이후 지급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주2)} <i>2021년 개정</i>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주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주2)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전자제출이 원칙

2)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①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 연도 1월까지 수시분은 전자제출
- ②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 ①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②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③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1) 의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 **2021년 개정**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125%) **2021년 개정**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득법 81조의 11).

(2)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12월	다음 연도 3월 10일	다음 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2021년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월~ 6월	7월 31일	10월 30일
	7월~12월	다음 연도 1월 31일	다음 연도 4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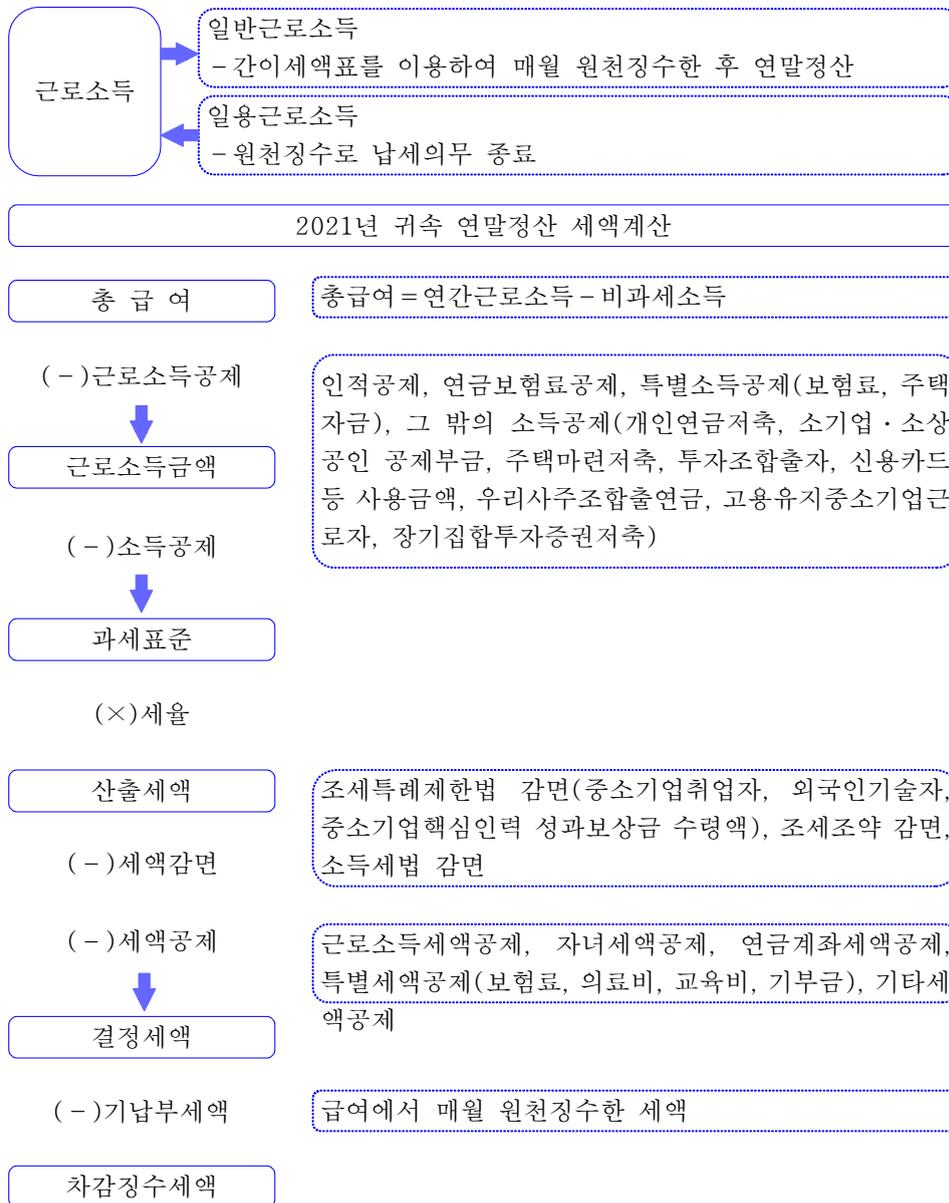
(3) 가산세 적용대상 사례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제 4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요



1.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꼭 이해하기

[Appetizer] 근로자는 세법상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일반근로자는 간이 세액표에 의한 예납적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고 일용근로자는 지급하면서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한다. 근로자에 대한 실수령액은 민감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급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근로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다.

(1)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임직원)인 근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법 20조 1항).

-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⑤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재직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실무 Point 소득통 12-0-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 근로자 :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2. 임원 :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말한다.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④ 감사
 -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①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②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확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③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④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⑥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년 개정
- ⑦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년 개정
- ⑧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⑨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⑩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⑪ 벽치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⑫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021년 개정
- ⑬ 임원의 퇴직급여 중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⑭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⑮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⑯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⑱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021년 개정

(3)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 여부	비 고
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
	국 외	과 세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3조 1항).

(4)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른 근로소득 종류

- 1) 일반근로자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타소득이 있을 경우)
- 2) 일용근로자 :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

(5)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종류

- 1)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⁵⁾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5)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의 범위(소득법 127조 1항 4호)

-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및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은 제외한다.

실무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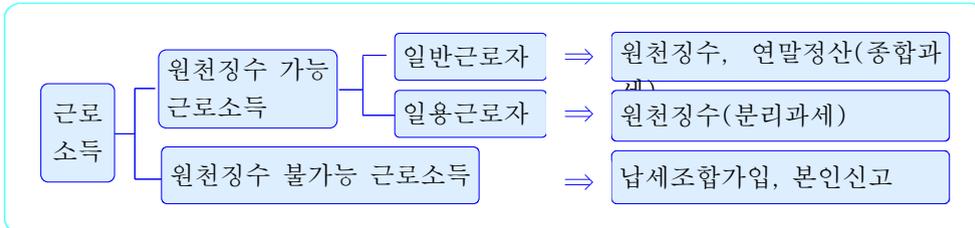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급여
- 당해 주식에 대한 매입비용을 국내의 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내국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본점의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 국내의 자회사에 근무한 임직원이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
- 외국법인의 본사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직원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해외파견근무계약에 의해 임직원을 해약관계회사에 파견한 경우 당해 해약관계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6) 인적용역(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의 구분

<인적용역의 구분>

구 분	근로소득자		자유직업가(프리랜서)	
	근로소득(일반)	근로소득(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속성	○	○	×	×
계속반복성	○	×	○	×
과세방법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3% 원천징수	8% 원천징수
종료시	퇴직소득	퇴직소득	-	-

실무 Point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해당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2.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의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⁶⁾(소득법 14조 3항 2호, 소득령 20조 1항).

-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
 - ㉠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6) 아래 '①' 각 목 및 '②'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① ㉠목의 경우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소득칙 11조).

-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③ 위 '㉠' 또는 '㉡'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⁷⁾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비교

구 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⁸⁾ 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20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1년 개정

7) 「민법」 제 160조에 따라 역월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달근무 약정시에도 3개월이다.
 8)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일용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비슷하나 다음의 차이가 있다.

- ①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의 총액을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조건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 ②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여액을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금액인 월 3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소정의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원천 46013-159, 2002.5.10.).

(4) 근로소득공제

근로를 제공할 1일⁹⁾마다 15만원을 공제한다(소득법 제47조 2항).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계 산 구 조	금 액
일당 20만원으 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원천징수세액 : 1,350원×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9) 1일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소득통 47-104...1). 예를들어 당일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은 2일이다.

(7)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1)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 2)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수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
- 3)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원천징수)된다.

실무 Point 다수 사업장 소액부징수 판단

1일 2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4.8.)

3. 이런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1)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1)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②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¹⁰⁾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③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④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⑤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10)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2)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p>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p> <p>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p>

3)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¹¹⁾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실무 Point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예규>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의 주택임차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소득 46011-21446, 2000.12.22.).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원천-299, 2011.5.24.).
- 해외주택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제외되고(서면1팀-344, 2005.3.29.)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재소득 46013-124, 2001.6.20.).

11)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¹²⁾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무 Point 관련예규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소특-67, 2003.12.13.).

5)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칙 10조 1항).

6)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령 38조 1항 7호).

4. 활용도 높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를 파악하자!

[Appetizer] 근로자의 주요 적용 비과세 혜택이 실비변상 비과세이다. 이는 회사에서 실제 지출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금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비과세(과세권 포기) 해주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여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 보자.

(1)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¹³⁾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한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필요비용 지원,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 등이 있다.

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실무 Point 비과세 요건

- ① 종업원(임원)의 소유차량일 것(이륜자동차도 포함)
- ② 종업원이 직접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③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④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2)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이고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 46013-3228, 1996.11.19.).

3) 출장비의 판단기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그 목적·기간·출장지 등을 감안해 실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의 경우는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재소득 46073-146, 1999.7.19.)

4)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소득통 12-12...3)

국외근무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일정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

(2)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제화 및 피복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4)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20만 이내 취재수당

(5)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6)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13) 반드시 종업원 본인명의로 차량만 가능(공동명의로는 부부만 가능).

(7)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8)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소득령 12조 18호)

5.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파악하기

(1) 의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한다(소득령 17조).

(2)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령 12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령 17조의4) 2021년 개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을 제외한 것을 월정액급여로 본다.

6.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및 과세특례

(1)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외국인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일정 급여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법 12조 3호 차목).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써 일용근로자는 제외)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다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조특법 18조의 2 항).

7.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이해하기

(1) 의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소득령 17조의3).

(2) 대상

- ① 종업원(임원 포함)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3) 보상한도

연간 500만원 한도(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포함)

실무 Plus⁺ 직무발명 보상내용(발명진흥법 15조)

- 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
- ②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에 대한 보상
- ③ 특허권 등의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보상

8.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 분	내 용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

구 분	내 용
급여 등	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¹⁴⁾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p>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p>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14)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 사용자의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6) 기타사항

①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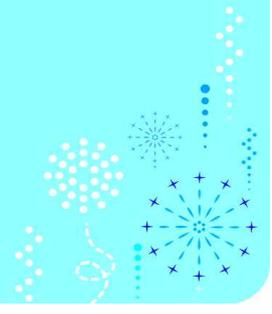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칙 별지 제25호 서식) 비치·기록
- 전산 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갈음(소득령 196조)

② 근로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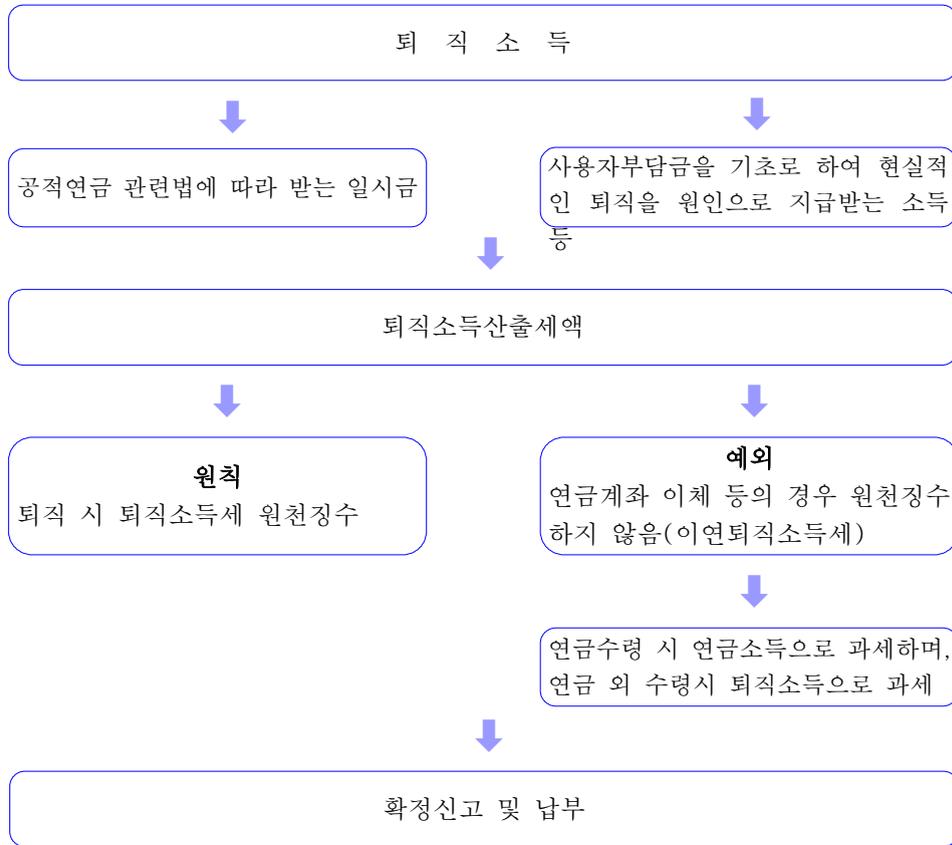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없음(농특별 7조 3항).
-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함(지방방법 103조의13 1항)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액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

제 5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 ※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퇴직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제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유형별로 회계처리방식이 다르므로 구분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중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

2. 어디까지가 퇴직소득인가?

[Appetizer]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의 분류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중요하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소득 외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정관 등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¹⁵⁾에 따라 받는 일시금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을 말한다(소득령 42조의2 1항 1호).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2)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①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법 22조 3항).
- ②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소득령 43조 2항).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15)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조특법 86조의3 3항).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4)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소득령 42조의2 4항)

-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⑤ 해고예고수당
 - ☞ 해고를 위해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⑥ 퇴직금전환금

3. 과연 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가지급금에 해당),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 원칙 : 퇴직한 날(소득법 50조 2항)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소득법 50조 2항 후단).

-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급받는 퇴직공제금. 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③ 퇴직관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④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5.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정산

(1) 원천징수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소득법 127조·128조). 확정급여형은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하고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1)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특례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소득법 147조 1항).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법 147조 2항).

2) 적용의 배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법 147조 4항).

(2) 정산

근로자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나, 동일한 회사에서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소득을 재계산 해보아야 한다.

제 6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요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
- 파생금융상품이자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것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등
-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배당소득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파생금융상품 배당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 이익
- 파생결합증권 등 이익(골드뱅크 등)

=

금융소득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금융소득 :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25%
-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 42%(90%)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①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② 경락대금 등 특정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③ ①, ② 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원천징수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 : 할인매출하는 날
-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 시 : 3개월이 되는 날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금융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및 세율 이해하기

[Appetizer]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이지만, 비금융회사는 25%이다. 법인이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일 경우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정산과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득 정책을 세워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법 127조 1항)
- ②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소득법 127조 2항)

(2) 원천징수세율

1) 이자소득의 경우(소득법 129조)

구 분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단, 적격P2P업체로부터 2020.1.1.~2020.12.31.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 : 14%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42%)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차명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차등과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2) 배당소득의 경우(소득법 129조)

구 분	원천징수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차명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차등과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3) 원천징수의 방법 및 세액납부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 한 후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소득법 127조 1항). 또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법 128조 1항).

2. 금융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이해하기

(1)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인의 금융소득은 다음의 금융소득만 원천징수 대상이다(법인법 73조, 법인령 111조).

- ① 이자소득금액
- ②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
 -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 제외

(3) 금융회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령 111조 1항).
- ② 위 외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4) 원천징수 방법

- ①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법인법 73조 1항).

- ②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법인법 73조 7항).

3.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이자소득 이해하기

(1) 법인의 특수관계인 관련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1) 법인이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약정에 따라 대여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특수관계인은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어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법인에 원천징수를 위임할 경우 법인이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결산 및 세무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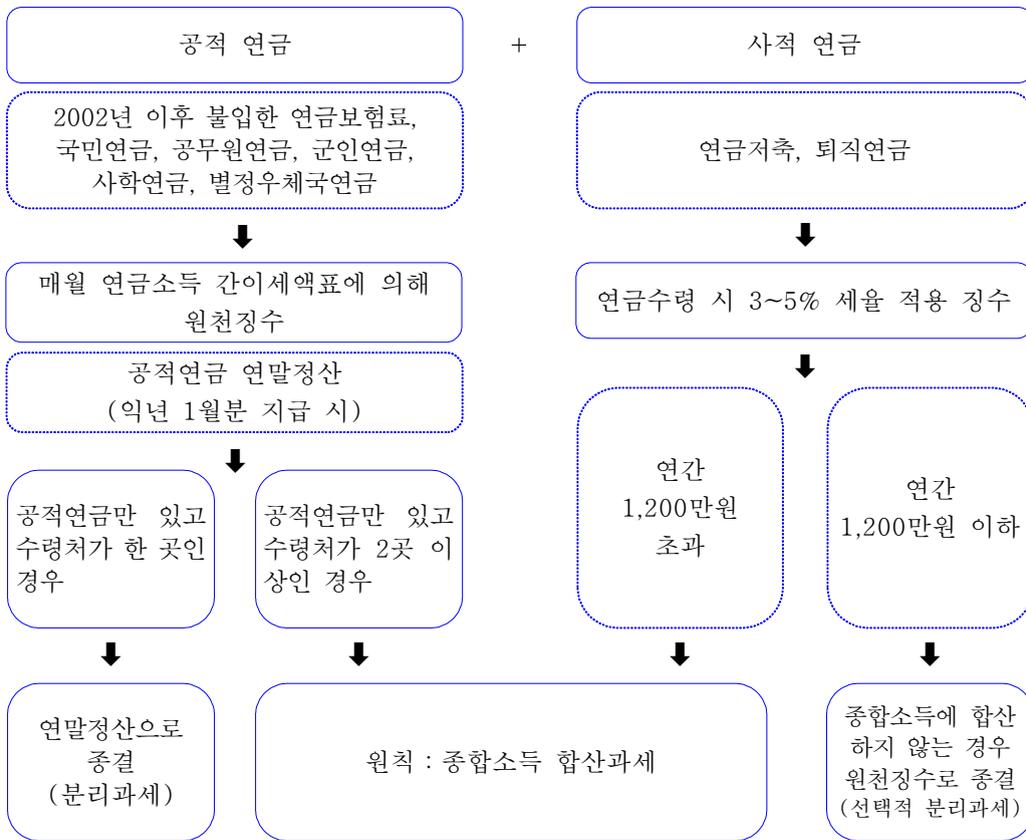
법인이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다. 소득처분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 및 납부한다.

(2)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차입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은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지방소득세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이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차입 또는 저리차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무상차입일 경우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제 7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연금소득 원천징수 개요



1. 연금소득의 범위는?

[Appetizer]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은 크게 납입연도방식 및 수령연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입 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과세를 하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하는 수령연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의 연금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연금소득의 올바른 이해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은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득법 20조의3 2항).

(2) 연금계좌 등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금계좌 등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소득법 20조의3 1항 2호).

2. 연금소득에도 비과세는 있다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구조특별법 86조 2항)

3.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 입 시 기
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4. 연금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Appetizer]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거치며,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령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소득법 143조2).

- 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②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 (제출안한 경우) 공제 대상 가족 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소득법 129조 1항)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1)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법 20조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 세율의 70(60)% - 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인 경우 70% 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인 경우 60%
	연금 저축 계좌 원천			세액공제 (소득법 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법 20조의3 2호 다목)

-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분리과세 제외)
- **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 경우,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소득(3~5%) 과세,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2) 연금 외 수령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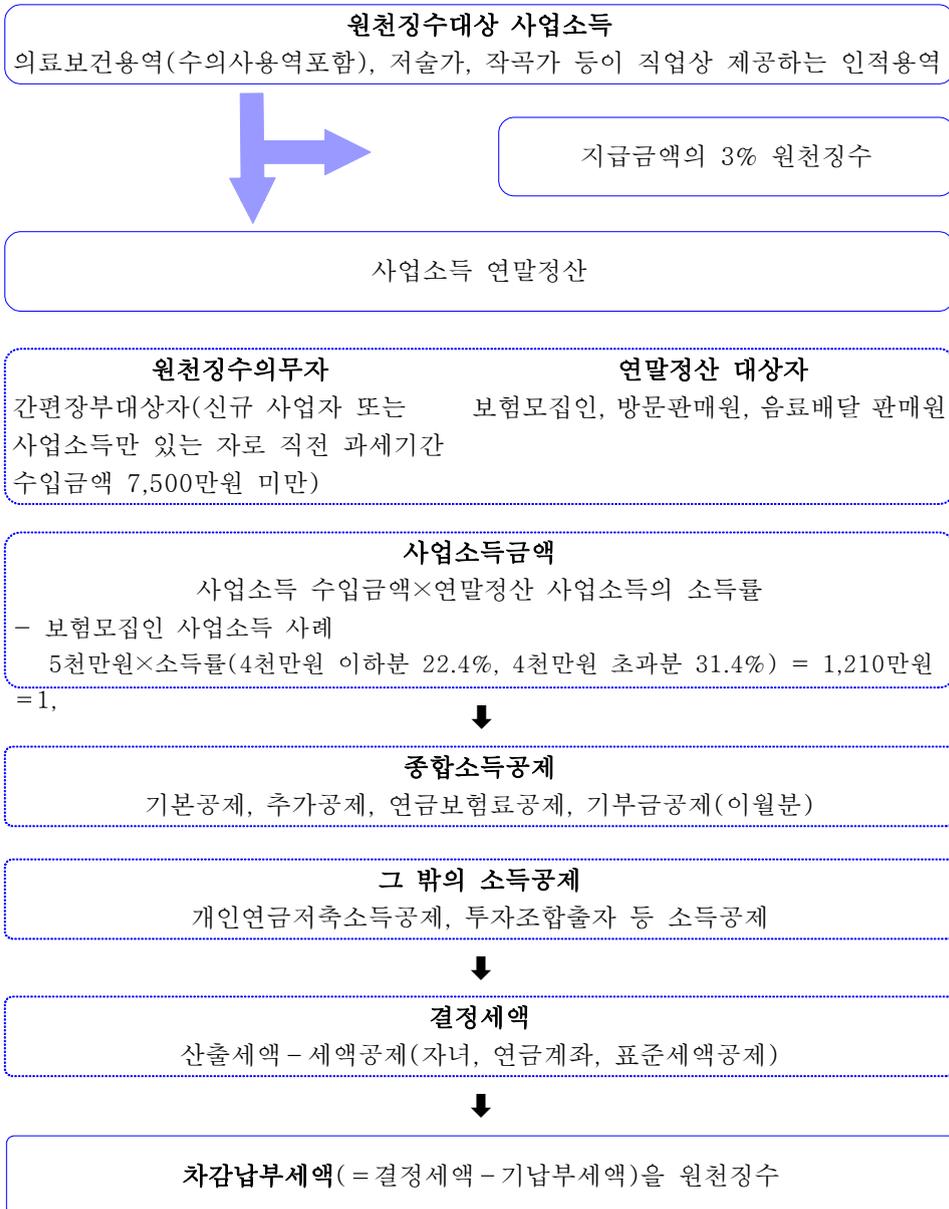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 제외	-	
퇴직 연금 계좌 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법 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저축 계좌원천	세액공제(소득법 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소득법 20조의3 2호 다목)	기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제 8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Appetizer]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당한 후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원칙이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소득령 184조).

실무 Point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령 184조 1항)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이렇게!

(1) 원천징수할 세액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한다.
- ②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계약기간 3년 이하)는 20% 원천징수 한다.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한다.
- ②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3. 일정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필요하다!

(1)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

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소득법 201조의11).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②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2)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②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text{사업소득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times \text{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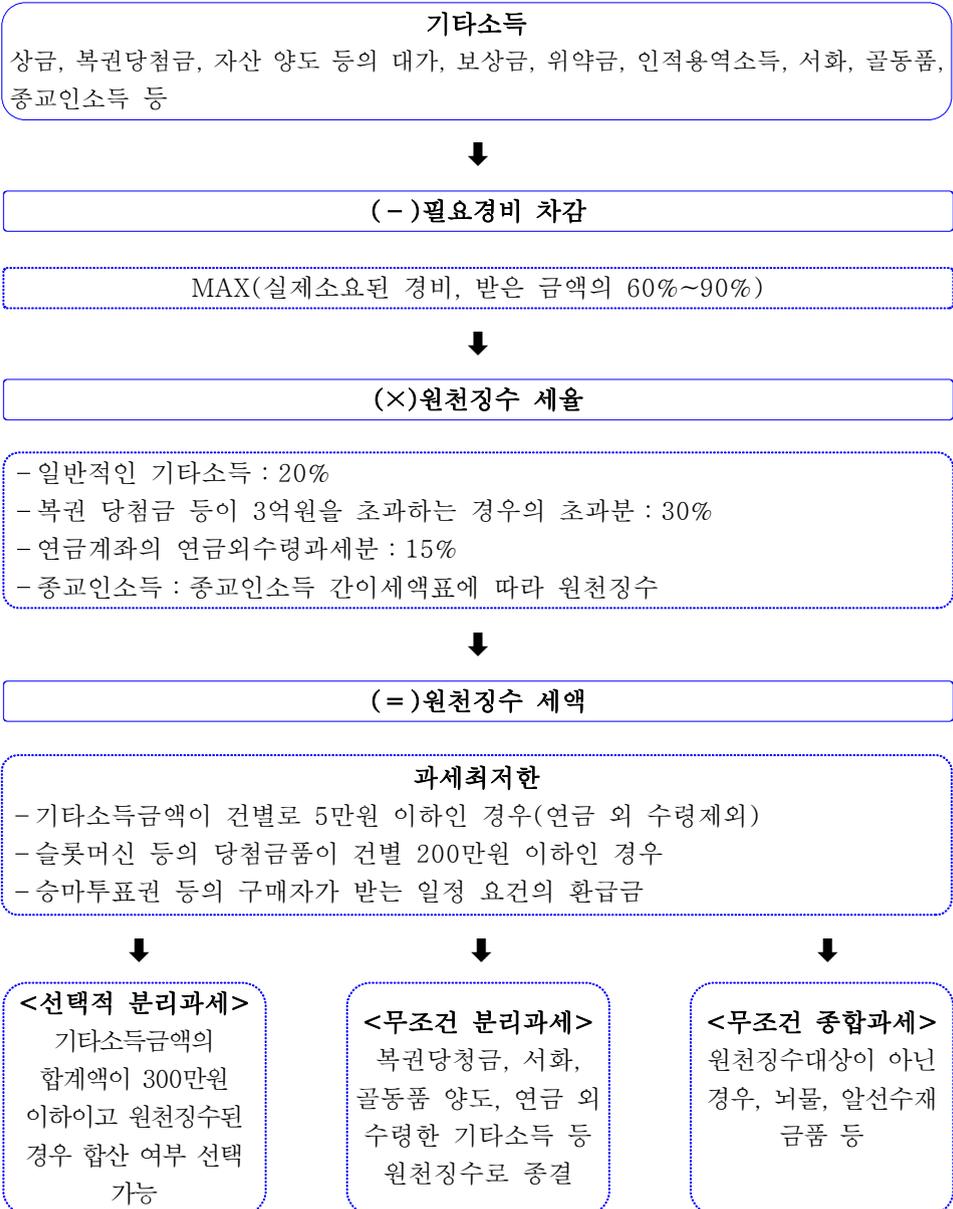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4) 연말정산 시기

- 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
- ②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한다.

제 9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만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다만 별도로 세법에서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Appetizer]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법 37조 2항). 다만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소득법 37조 3항).

4. 기타소득 원천징수

[Appetizer]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을 잘 구분해야 실수가 없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봉사료수입)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1) 원천징수세율

구 분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소득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원천징수하지 않음
복권당첨금품 등(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당첨금품)	기타소득금액×20% (3억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 시금	기타소득금액×15%
그 밖의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20%

(2) 원천징수시기 및 기타소득세 신고·납부

- 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법 128조 1항).
-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법 145조의2, 131조 2항).

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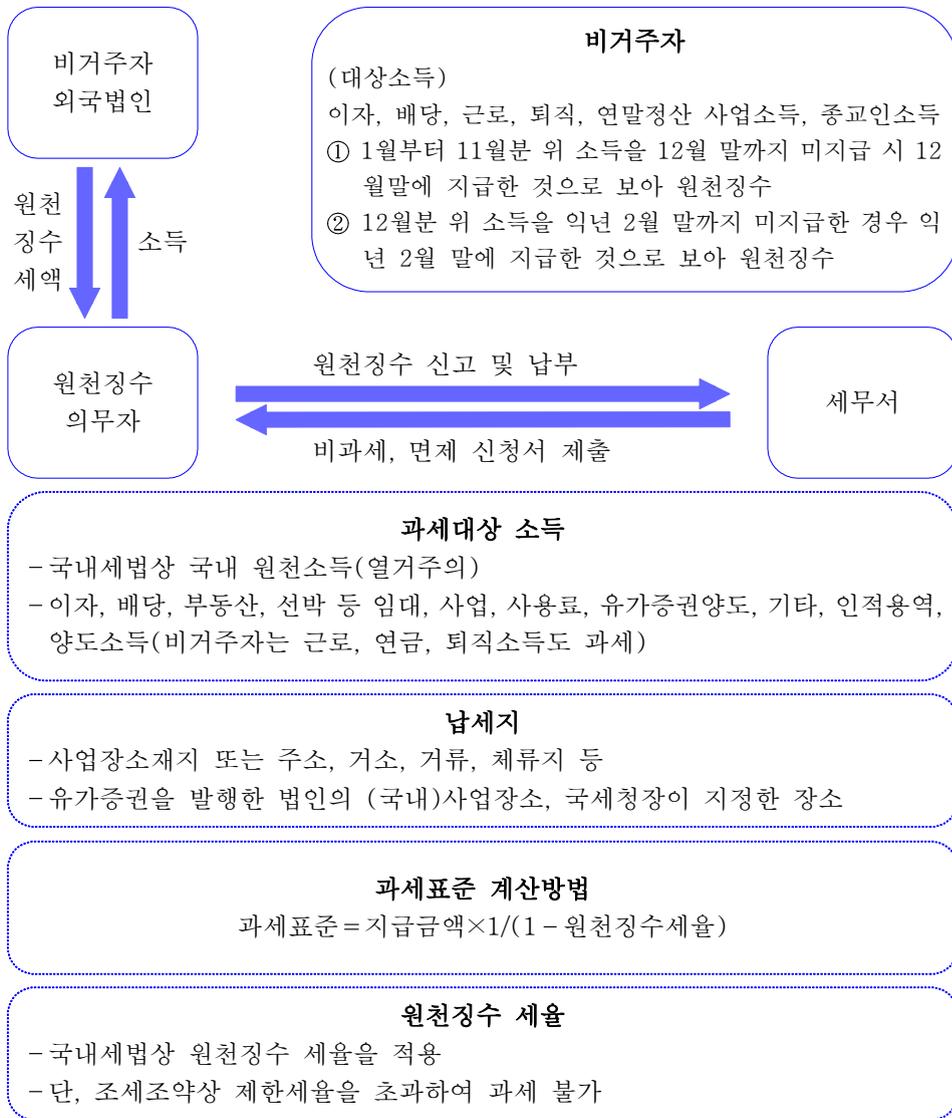
[Appetizer]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제 10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비거주자, 외국법인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소득령 179조)

1)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열거주의 과세방식).

①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②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10호	사용료소득			20%
11호	유가증권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타소득			20(15)%
7호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금소득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가능)	20(3)%
3호	부동산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8호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 ②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 한다.
- ③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56조의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한다.
- ⑤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 원천징수 한다.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 ⑥ 양도소득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한다(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⑦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차목(사용지기준 조세조약상대국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 미등록등에 따른 특허권침해에 따른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은 15% 세율을 적용한다.
- ⑧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하다(소득법 121조 5항).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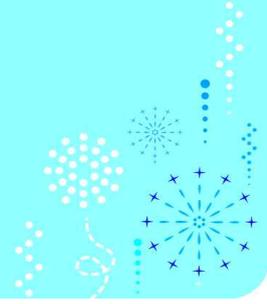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자소득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 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15)%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3)%
7호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

-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 ②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한다(예납적 원천징수).
 -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③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한다.

-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⑤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사용지기준 조세조약상대국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 미등록 등에 따른 특허권침해에 따른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은 15%세율을 적용한다.
- ⑥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원천징수 특례세율(20%)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제공기간에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용역제공기간에 발생한 소득 - 소득과 관련된 입증비용) × 20% - 기납부세액

제시장 간이세액표 및 4대보험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

(1) 간이세액표의 의의

근로자의 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 일시적 세부담 증대, 신고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까지 연말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의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과세관청에서 급여대비 간이세액표를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산정된 금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 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소득령 189조 1항 별표2).

(2) 사전준비

- ① 임직원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월의 급여 확정한다.
- ② 해당 임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파악한다.
- ③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금액 확인한다.

(3) 간이세액표 적용 시 구체적 요령

1) 월급여액

- ①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적용한다.
- ② 과세되는 학자금 존재할 경우에는 학자금은 원천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월급여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2) 공제대상 가족의 수

-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를 합산한다.
- ②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③ 근무지신고서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임직원일 경우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해야 한다.

- ④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추가로 더한다.
- 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제외한다.
- ⑥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을 공제대상자로 하여 적용해야 한다.

3)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①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2021년 개정**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적용사례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이고 이 중 1명의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4(3+1)를 적용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4명이고 이 중 2명의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6(4+2)를 적용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5명이고 이 중 3명의 20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8(5+3)를 적용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명 초과시 적용방법

-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 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②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6)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해서 비과세근로소득을 공제하기 전 월 총급여액의 19%를 간이세액표에 같음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7) 간이세액표의 구성

- 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② 근로소득공제(소득법 47조 1항)

총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 총급여액×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총급여액×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총급여액× 2%

* 2,000만원 한도

- ③ 기본공제(소득법 50조 1항)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공제

구 분	공제금액	적 용 요 건			
		관 계	소득금액*	나 이**	생계
본인공제	150만원	본 인	-	-	-
배우자공제	150만원	배 우 자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1명당 150만원	직계존속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
		형제자매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
		직계비속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
		입양자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
		위탁아동	100만원 이하	18세 미만	○
		수급자 등	100만원 이하	-	○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 ④ 연금보험료공제(소득법 51조의3)
월 급여의 4.5%를 공제한다(하한급여와 상한급여가 존재함).
- 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총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연간총급여액의4%-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총급여액의 1.5%	360만원+연간총급여액의 2%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총급여액의 1%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⑥ 적용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15%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38%
3억원 초과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42%
10억원 초과 <i>2021년 개정</i>	3억8,640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45%

(4) 원천징수의 선택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2. 4대보험

2021년 사회보험 요율표

구 분		근로자	사업주	합계
건강보험	월 보험료(하한액 19,140원, 상한액 7,047,900원) ⁹⁸⁾	3.43%	3.43%	6.86%
장기요양		0.395%	0.395%	0.79%
국민연금	월 보험료(하한액 28,800원, 상한액 452,700원) ⁹⁹⁾	4.500%	4.500%	9.000%
	실업급여	0.800%	0.800%	1.6%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0.250%	0.250%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0.450%	0.450%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0%	0.650%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0%	0.850%
고용보험		0.800%	1.050%	1.850%
산재보험	사업종류별로 상이(해당 요율은 일반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기준)		0.9%	0.9%
합 계		9.925%	11.925%	21.85%

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4조 제1항

99) 2020.7.1.~2021.6.30. 적용(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